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2825 |
|------|------|

2022. 2.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김소영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2.1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접근성’ 을 ‘정보통신접근성’ 으로 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III.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김소영 의원(비례, 민생당)이 발의하였음.

나. 관련 입법 현황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신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3년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접근,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2016년 4월 14일부터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음.

- 2019년 7월 18일 동 조례는 같은 해 2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범위를 기준 ‘인터넷’에서 ‘정보통신망’으로 확대¹⁾함에 따라 ‘웹접근성’이라는 용어 대신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정보접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차례 제명을 변경하였음.

-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6월 10일부터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실시한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으로 명명하여 용어가 정리되었음.
 - 이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과 함께 진행해오던 모바일 앱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대한 인증을 “정보통신 접근성”으로 명명하여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다.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안은 조례 제명 및 내용의 “정보접근성”을 “정보통신접근성”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 조례가 제1조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1) 동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접근대상은 기존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되었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보통신접근성”과 일치하므로 용어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존 “정보접근성”이라는 용어가 “정보통신접근성”이라는 의미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여전히 통용되고 있고, 정부기관을 포함한 해당 업계에서는 “정보접근성”이 ‘어떠한 이용 환경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디지털 정보격차²⁾ 해소’ 등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유사 단어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서울시 공공기관 내에서도 용어 사용에 주의 해야 하겠음.
- 또한 동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이었으나, 2019년 8월 22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관리하는 ‘홈페이지팀’이 실제 개편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되어 해당 조례도 소관이 변경된 것임.
-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시민소통기획관 홈페이지팀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관리하는 기능만 있을 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스마트

2) 정보취약계층 뿐 아니라 세대·남녀 등에 따른 정보격차를 포괄하는 단어임.

도시정책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³⁾하다고 주장해왔음.

- 따라서 동 조례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포함되어 서울시의 주요 정책화하거나 동 조례를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재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동 개정안 제1조 내용 중 “대통령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⁴⁾를 뜻하므로 정확한 명기를 위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 중 ‘대통령령’이란 입법 용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 하므로 명확한 법령을 명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3)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추진전략 및 주요업무로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설정하고 있음(붙임1 참고)

4)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4. (생략)
② (생략)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조의 “대통령령으로” 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수정함(안 제1조).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2명, 전원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 안 번 호 | 관련 2825 |
|------------|---------|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0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중 ‘대통령령’ 이란 입법 용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 하므로 명확한 법령을 명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조의 “대통령령으로” 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수정함(안 제1조).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대통령령으로” 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에서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로 한다.

제3조 중 “정보접근성”을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법 제32조제5항”

을 “법 제46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접근성”을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제6조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접근성”을 각각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보접근성”을 “정보통신접근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 이 <u>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u> 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 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정보격차”란 <u>「국가정보화 기본 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 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u>정보접근성</u>”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 <p>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u>정보통신접근성</u> 향상을 위한 조례</p> <p>제1조(목적) ----- -- <u>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u>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 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 · 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지능정보화 기 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3호에-----. 3. “<u>정보통신접근성</u>”이란 법 제46 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

| | |
|--|---|
| <p><u>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u></p> | <p>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 -----.</p> |
|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p>제3조(책무) ----- ----- <u>정보통신접근성</u> ----- ----- -----.</p> |
|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u>정보통신접근성</u> -- ----- ----- -----.</p> |
| <p>② (생략)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 <p>② (현행과 같음) ③ ----- -----.</p> |
| <p>1. (생략) 2.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 <p>1. (현행과 같음) 2. ----- <u>정보통신접근성</u> --- ----- 3. · 4. (현행과 같음) 5. ----- <u>정보통신접근성</u> -----</p> |
| <p>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u>법 제32조제5항</u>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u>정보접근성</u> 준수에 관</p> | <p>제5조(실태조사) ① ----- ----- <u>정보통신접근성</u> ----- <u>법 제46조제6항</u>에----- ----- ----- <u>정보통신접근성</u> -----</p> |

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생 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2. · 3.(생 략)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정보통신접근성에-----

-----.

제6조(추진사업) -----

----- 정보통신접근성 -----

1. ----- 정보통신접근성 -----

2. ----- 정보통신접근성 -----

3. -- 제47조의제1항에 ----- 정보통신접근성 -----

4. (현행과 같음)

5. ----- 정보통신접근성 -----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

-----.

1. ·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

----- 정보통신접근성 -----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

② ----- 정보통신접근성에-----
-----.

제8조(위원회) ① -----
-----정보통신접근성 -----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정보통신접근성 -----

②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가-----

----- 정보통신접근성 -----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로-----.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정보통신접근성 -----
----- 정보통신접근성 -----

| | |
|--|--|
| <p>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u>정보접근성</u>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 <p>----- ----.</p> <p>제10조(위탁) ① ----- <u>정보통신접근성</u> ----- ----- ----- <u>정보통신접근성</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포상) ----- <u>정보통신접근성</u> ----- ----- -----.</p> |
|--|--|